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 1. 사립학교법 (개정).....2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4
- 3.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5
-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7
-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8
-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10
- 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1
- 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13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4

- 1.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5
- 2.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16
- 3.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안.....17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18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사립학교법

1 [일부개정 `21. 9. 24. 시행 `22. 3. 1.]

소관부서 :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044-203-6931

■ 개정이유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제17조제5항 신설).
- 나. 임원취임승인취소 사유에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제20조의2제1항제4호).
- 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제21조제7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 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함(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 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원, 직원, 학생이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함(제32조의3).

- 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함(제53조의2제11항 신설).
- 사.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에 학부모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6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아.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제62조의3 신설).
- 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제66조제2항).
- 차.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3에 제3항 신설).
- 카.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법률 제1837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4).
- 타.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5 신설).
- 파. 관할청이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6 신설).
- 하.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7 신설).
- 거.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72조의3 신설).

너.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제72조의4 및 제72조의5 신설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일부개정 `21. 11. 30. 시행 `22. 3. 1.]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3 [제정 `21. 9. 24. 시행 `22. 3. 25.]

소관부서 :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 044-203-6523

■ 제정이유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임.
- 그러나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둠(제6조).
- 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바.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4 [일부개정 `21. 8. 31. 시행 `22. 3. 1.]

소관부서 :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1. 9. 24. 및 시행 `22. 3. 25.]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

■ 제정이유

-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 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3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제4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 사업 범위, 사업의 우선위탁, 정관,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23조까지).
- 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과 우선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8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하도록 함(제34조).
- 차. 이 법에 따른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

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2. 3. 24. 시행 `22. 3. 25.]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2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회계처리 시 수입 및 지출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2. 3. 15. 시행 `22. 3. 15.]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 개정이유

-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철거 대상 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직권 철거 절차 및 보상비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부동산원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절차(제6조의2 신설).

- 1) 건축주가 건축물 직권 철거 계획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함.

나. 직권 철거 보상비 산정 방법(제6조의3 신설).

-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에 따른 보상비 지급 기준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철거 대상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물리적·경제적 감가(減價)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정함.
- 2) 건축물의 철거 보상비를 산정할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되, 건축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함.

다.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특례의 내용(제10조의8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준’, ‘세대 간 경계벽 설치 기준’ 및 ‘승강기 설치 기준’ 등으로 정함.

라. 정비지원기구 지정 대상 확대(제12조의2 신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추가함.

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21. 9. 24. 시행 `22. 3. 25.]

소관부서 : 교육부(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5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 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격교육은 그동안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2. 17.]

■ 제정이유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및 재배 농가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2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2. 2. 21.]

■ 제정이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영유아 발달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정이유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등록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개설·변경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 지역이 2개 이상 시·군 또는 자치구의 관할에 속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다. 시장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의견22-0051]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기장군수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단체인 “기장군 청년연합회”에 교육 및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7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장군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는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4항에서는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장군조례 제3조에서는 청년단체에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청년단체를 “기장군 청년연합회”와 “기장군 읍·면 청년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기장군 청년연합회”와 “기장군 읍·면 청년회”의 회원이 서로 중복되더라도 같은 조직이 아닌 각각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개별 조직인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기장군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은 “기장군 청년연합회”만이 지원 대상이라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고,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공모 절차의 예외인 같은 항 제4호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경쟁으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며, 이 사안의 경우 그러한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각주: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0페이지 참조), 만일 별다른 이유 없이 지방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바와 달리 공모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다면 기장군조례에서 보조 대상인 청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장군 읍·면 청년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수는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본문에 따라 “기장군 청년

연합회”와 “기장군 읍·면청년회”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 지방보조사업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등 관련)

[의견22-0049] 충청북도 증평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등을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공익법인법 제6조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제4항)하면서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공익법인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서로 입법목적이나 규정사항을 달리 하는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출자출연법과 공익법인법이 모순·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두 법령은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된 이사 중에서 공익법인법 제8조에 따라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법과 달리 이사 중 이사장이 될 자를 특정하여 공개모집하고 이사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익법인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 ⑤ (생략)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이사회) ①·② (생략)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3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조 등 관련)

[의견22-0042] 경기도 수원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는 시(市)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명은 “○○특례시”가 아닌 “○○시”이므로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자치법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자치법규의 제명에 포함시키고, 자치법규 각 규정들에서도 “○○시” 또는 “○○시장”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시(市)가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같은 호의 약칭을 사용하여 “○○시”가 아닌 “○○특례시”로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같은 항 제1호) 및 시·군·구(같은 항 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약칭”은 입법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 같은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 “특례시”라는 약칭을 사용한 것은 같은 호 이하의 「지방자치법」 규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특례시”로 줄여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서 사용한 “특례시”라는 약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명칭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입법 편의를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호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는 시(市)의 지방자치단체명은 “○○특례시”가 아닌 “○○시”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 전반에 “특례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사무 분야에 까지 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는 대도시의 자치법규 제명 및 규정에서 “특례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 추가로 교부하는 도세의 비율은 사무이양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시세로 한다.